남일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1999년 3월 1일
개정 2009년 3월 1일
개정 2011년 3월 1일
개정 2011년 5월 1일
개정 2012년 3월 1일
개정 2012년 7월 1일
개정 2012년 7월 18일
개정 2013년 7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2월12일
개정 2017년 12월14일
개정 2018년 4월 6일

전 문

이 규칙은 학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2조【명칭】

본교는 남일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0에 주소를 둔다.

제4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②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③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④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⑦ 학생 포상, 징계,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⑧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⑨ 학칙 개정 절차

⑩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학년】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교육법 62조)**

제8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5월 12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방학
6.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7. 학교재량휴업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의 휴업일은 제1호 및 제2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제8조 제3항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임시 휴업기간, 사유 및 조치내용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이나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학급편성】

본교의 학급편성은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적정한 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 10조【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준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의 학적으로 관리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29조)**

제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1조【교과】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충청북도 교육

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및 본교의 학교 교육 과정에 의하여 편성 · 운영 한다.

② 본교의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제12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을 감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조 1항)** 이 경우 학교장은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한다.(교육장)

② 학생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별표2에 준한다.

③ 학생이 개인의 용무가 아닌 공적인 용무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 체험 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가 원할 경우 교류 학습,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체험 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4조 【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

제 5 장 입학·편입학·면제·유예·전학·수료 및 졸업

제15조 【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②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법령(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③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자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자녀가 입학하고자 할 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나 관할 구청장 발행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혹은 해당 학구내 거주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할 수 있다.

제16조【미 입학아동의 통보】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조기입학】

① 조기입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로 한다.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면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정한 적응 기간(1개월)이 경과한 후 입학이 허용되면 의무취학 대상자의 보호자와 동일하게 졸업시까지 아동을 취학시킬 의무가 있으며 취학의무 불이행시 초. 중등 교육법 68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 · 전학 및 재 · 편입학 절차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다.

제19조 【재취학】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 유예, 정원 외 관리 중인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은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업무담당, 평가담당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2. 학생의 편입 및 재취학 시에는 요청 시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진도 내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목의 지필평가와 면접을 실시하고 각 교과별 학력도달도가 60% 이상일 때 해당 학생의 수학능력여부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단 2학년 이하는 국어와 수학 2개 교과로 한다.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 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취학의 면제 · 유예】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와 해외 이민으로 인하여 전 가족이 외국으로 이동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다.

⑤ 귀국학생 및 외국인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초등교육법시행령 75조)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9조의 2(귀국학생 등의 입학 · 전학 및 편입학),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학적사항)제2항, 별지 제7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 · 졸업 · 진학평가위원회)등에 따른다.

제21조 【전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전산으로 송부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거나,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진학절차를 마친 아동이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1차로 입학 또는 전입학을 독려하고 2차로 아동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⑥ 7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 2차에 걸쳐 학부모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출석을 독려하여야 하며 2차도 무단결석이 이뤄질 경우 동장에게 장기 결석자 통보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출석을 독려하여야 하며 그래도 무단결석이 출석일수의 3분의 1이상 이어질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정원외 학적관리를 할 수 있다.(정원외 학적관리 비치)

제22조 【수료 · 졸업 등】

① 학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6개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 【조기진급 · 조기졸업 등】

① 본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해 선정한다.

1. (대상자 선정)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나.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다.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 남일초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조기진급·졸업 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된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5조 【조기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26조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7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④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기타】

① (인정 평가) 인정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학년도 말인 2월 중에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희망자가 있을 시에만 실시한다.

② (진급 및 졸업 시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시기는 일반 학생과 같이 실시한다.

③ (기록)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 및 졸업 후의 상황 란에 기록한다.

④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7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32조【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징수한다.

② 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장 학생포상, 징계,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3조 【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대상 및 방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상규정)

제34조 【학생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교내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 30일 이내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징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대통령령 제27418호, 2016.8.2. 일부개정)는 남일초 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9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③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7조【운영】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제38조【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9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규정】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남일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구성 및 운영】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이외에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교권보호위원회에 규정에 따른다.

제12장 교외 체험학습

제42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일 최소 3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44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3장 학교 폭력 선도·보호

제45조【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피해학생의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제14장 학칙 개정절차

제48조 【학칙 개정절차】

①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 제4조 7항부터 9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9조 【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부규정】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